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712

발의연월일: 2022. 8. 1.

발 의 자:류성걸・강기윤・金炳旭

박정하 • 송언석 • 안병길

이주환 · 정운천 · 조명희

조은희 · 주호영 · 최춘식

홍문표 · 홍석준 의원

(149]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, 농어민 직접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,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.

그러나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영농·영어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,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민의 소득보전에기여하고 있는 바,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2022년 말로 도래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

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의2제1항, 제69조의3제1항, 제105조제1항, 제106조제2항).

주요내용

- 가.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 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69조의2제1항)
- 나.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69조의3제1항)
- 다.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 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105 조제1항).
- 라.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·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10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2 제1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69조의3 제1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) ① 축산에 사 소득세의 감면) ① -----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(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"축사용지"라 한다)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 2025년 12월 31일 ----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
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69조의3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어업에 종사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 지등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.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「도시개발법」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

<u>.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9조의3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
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
<u>2025년 12월 31일</u>

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 ~ ③ (생 략)

-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8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다.
 - 1. ~ 6. (생략)
 - ② (생 략)
-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지 ① (생 략)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,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

·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용) ①
2025년
<u>12월 31일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(현행과 같음) ②
<u>2025년</u> 12월
31일

에만 적용한다.	
1. ~ 22. (생 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